

#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72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3. 13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3. 25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)

#### 가. 개정이유

성차별적 용어를 중립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언어로 개선하여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「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1) 성평등가족부 「생활체감형 정책」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용어 개선(안 제2조제1호)

- ‘윤락행위’를 ‘성매매’로 변경

2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- 약칭 정비

. 목적 규정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정비(안 제1조 및 제2조)

. 약칭을 하지 않은 용어는 약칭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띄어쓰기, 맞춤법 및 관용적 표현 정비(안 제2조~제8조)

-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(안 제9조)

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청소년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협의
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 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88(2026. 1. 15.)호]
- 4) 기타
  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120호
  - . 예고기간: 2026. 1. 16.~ 2026. 2. 6.(21일간)
  - . 예고결과: 의견없음
 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 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  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 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2조제1호) ‘윤락행위’ 등 성차별적 용어를 ‘성매매’ 등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성별영향평가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조~제9조) 「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, 별표, 약칭, 띄어쓰기, 맞춤법, 관용 표현 등을 정비하고, 실익 없는 규정(제9조)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간결하게 개선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통행금지·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기준(제2조), 지정 절차(제4조), 통행 제한 시간(제3조), 통행금지구역 등표시(제6조) 및 관리·운영 사항(제7조~제8조)을 현실과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,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집행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됨.

## 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근거하여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정비하고,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며 조례 문언과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